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지 면) 1. 4(수) 석간 (인터넷) 1. 4(수) 06:00	-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세희 (044-204-7570)
		담당자	사무관 박준성 (044-204-757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021년 7월 27일 제정됐으며,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추진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마련한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과 함께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으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져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중소기업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와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신 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